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 안정적으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교육·훈련을 수료한 역학조사관 등의 정보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으로 기록·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교육·훈련 수료자 명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3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교육·훈련 이수 등에 관한 정보

제22조의3제3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 시스템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3(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) ① (생 략)	제22조의3(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40조의5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②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법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교육·훈련 이수 등에 관한 정보</u>
4. ~ 6. (생 략)	5. ~ 7. (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
③ 법 제40조의5제3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”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「 <u>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2조의2에 따른 <u>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</u>
6. ~ 12. (생 략)	7. ~ 13. (현행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 - 7130